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201)

2024. 12.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01

### I. 건의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출경과

가.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 외 27명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2. 주문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군포로 피해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군포로 송환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 3. 제안이유

-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군포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5.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요

- 본 건의안은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국군포로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음.

### 2 검토의견

#### 1) 6.25 전쟁 국군포로의 개념과 현황

-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 포로를 교환하였으며,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국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됨.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귀환 이후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음.<sup>1)</sup>

1) 통일부(2022). 「2022 통일백서」.

- 현재 북한은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전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sup>2)</sup>

## 2) 서울시의 국군포로 관련 조례 입법 현황

- 서울시는 지난 316회 임시회( '23년 3월)에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조례의 대상은 국군포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등록포로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업무는 국방사무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회에서는 국군포로도 참전유공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2022년 1월 기준 국군포로 중 탈북·귀환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등록포로는 4명으로,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 국군포로를 참전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위와같이 귀환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지원 이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및 등록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김형석. (2017). 6.25전쟁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발굴 협상방안. 한국보훈논총, 16(4), 81-106.

### 3) 관련 중앙정부 정책현황

-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군인을 제외한 전시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sup>3)</sup> 따라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1.6월)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음.
  - 해당 제정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의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였음.
-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된 등록포로에게는 위로지원금, 특별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송환된 국군포로의 지원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실태조사와 송환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전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한편, 이와 별개로 24년 3월 통일부에서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로 문제 해결을 노력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sup>4)</sup> 역시 국군포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음.

<참고자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

3대 분야	8개 과제	주요 내용	부처
① 대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및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	① 범정부 납북자 대책위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li> <li>• 범정부 차원 소통·협업 체계 강화</li> </ul>	공통
	②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전파</li> <li>•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기획·추진</li> </ul>	통일부
	③ 시민사회 협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협업 강화</li> <li>•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li> </ul>	통일부
	④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불명 납북자가족 소재 추가 파악</li> <li>• 고령 귀환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li> </ul>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② 국제협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다양한 협력 활동 강화”	⑤ 납북자 문제 주요국과의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한미일 주요국 협의 계기, 외교협의</li> <li>• 미·유럽 의회 차원의 이슈화 추진</li> <li>• 한일 소통채널 강화, 협력사업 발굴·추진</li> </ul>	외교부 통일부
	⑥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북한인권 결의 등 계기, 이슈 부각</li> <li>•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11월) 계기 문제 해결 촉구 권고안 반영</li> <li>• 국제적십자위원회 통한 생사확인 요청</li> </ul>	외교부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⑦ 민간분야 국제협력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북피해자·단체 국제활동 지원</li> <li>• 해외 단체·기관과 협력사업 기획·추진</li> <li>• 미·일 등 유관국 민간단체간 교류 지원</li> </ul>	통일부
③ 대북 “올바른 방향으로의 북한태도 변화”	⑧ 대북메시지 지속 발신 및 대북 협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계기시 대외 메시지 발신 지속</li> <li>• 회담 개최에 대비한 대북 협상방안 마련</li> </ul>	통일부

4) 통일부보도자료(2024.3.14.).“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올해 3대 분야 8개 과제 추진”.

#### 4) 부서 의견 : 원안동의

- 서울시에서는 '23년 3월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피해진상 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원안동의 입장임.

### 3 종합 의견

-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송환된 국군 포로의 지원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실태조사와 송환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진상규명회복위원회의 구성과 국군포로 명부의 작성 등 국군포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됨.